

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6.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6월 9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6월 17일

(제148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보건환경국장 조규린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치매는 환자와 부양가족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등 가정·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
-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도립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1) 병원의 건립·운영 (안 제4조)

- 도에서 건립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
- 필요시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운영과

-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수탁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
- 필요시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2) 의료수가 적용 (안 제5조)

-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되
-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적용

3) 관리·지도 (안 제6조, 제8조, 제10조)

- 수탁자의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해 운영방침, 직원과 입원자의 정원 등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
- 필요시 운영상황조사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
- 병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, 입원기록, 회계경리 등의 기록을 비치토록 함

4) 공유재산의 사용 (안 제9조)

-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사용토록 하고
- 당해 위탁재산의 필요 유지관리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함

5) 위탁의 취소 (안 제11조)

-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고 약정사항 위반, 동의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○ 충청북도 치매요양병원 설치및운영조례안은

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립으로 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,

병원운영상 적자발생 방지및 서비스향상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

○ 세부적으로

- 안제4조제3항 (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지원) 규정 등과 관련하여 치매환자 기준설정과정, 병원명칭상 노인층 및 가족들의 기피현상 등을 고려하여 도립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“노인및치매요양병원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
- 안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퇴원판정의 객관성 및 치매환자의 장기치료 및 요양기간의 특성에 비추어 입원후 3개월 이내로 퇴원기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병원 이용의 극대화 및 병원명칭상 노인층 및 가족들의 기피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명칭을 변경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제명 “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”을 “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”으로 함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서식 (수정이유 및 주요골자)
-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본문
- 수정동의 조문대비표 (원안 : 수정동의)
-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본문 (원안-수정동의)

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

의안 번호	관 련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8년 6월 17일

제안자 : 김인식 의원

1. 수정이유

- 병원 이용의 극대화 및 병원명칭상 노인층 및 가족들의 기피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명칭을 변경

2. 주요골자

- 제명 “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”을 “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”으로 함

주 제 문

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”을 “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”으로 한다.